## 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38조,	제1조(목적)	ㅇ「관세법」에 가산세 감면신청 조항
제38조의2, 제38조의3, 제38조의4, 제39조,		(제42조의2)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
<u>제46조부터</u> 제48조까지, 제106조, 제106조	제42조의2, 제46조부터	사항 반영
의2, 제110조, 제110조의2, 제110조의3, 제		
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, 「수		
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		
특례법」 제16조 등에서 납세심사 및 관		
세조사업무 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		
위임한 사항,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		
납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		
목적으로 한다.		
제10조(보정신청) ① (생 략)	제10조(보정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	②	ㅇ 문구 수정(다른 호와 통일)
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		- 납세의무자의 신청 행위에 대하여
른 수입·납세신고 정정승인(신청)서를 납		세관장이 하는 사실행위가 '보정'에
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		해당하는 바, 문구 수정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세관장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.  1. 다수의 세관장에게 신고한 납세신고 건을 한꺼번에 <u>보정하는</u> 경우: 다수의 세관장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  2. (생 략)		
<u>&lt;신 설&gt;</u>	3. 세관장으로부터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 받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을 통지 받은 경우: 해당 정보 등을 제공ㆍ 통지한 세관장	○ 각종 세액점검 제도 활용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- <sup>①</sup> 납세오류 정보 또는 <sup>②</sup> 보정신청을 안내* 받은 경우, 한 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민원신청(보정신청, 수정 신고)이 가능하도록 허용  * 여러 세관에 납세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중 하나 또는 다른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 등을 받은 경우
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「관세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	③ 세액(이하 "부족세액"이라 한 다)을	ㅇ 문장 정비(약칭 표현)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라 한다)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		
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 ④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한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<u>부족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법 제41조에따른 가산금을</u> 부과한다.		○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* 반영 *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
		- 체납한 보정신청 세액(보정이자는 제외)을 대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
제11조(수정신고) ① ~ ② (생 략) ③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<u>부족세액(가산세를 포함한다)을</u> 납부하여야 한다. 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<u>않는 경우 법 제</u> 41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.	제11조(수정신고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	○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 반영  - 체납한 수정신고 세액(가산세는 제외)을 대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제19조(보정신청 통지 및 경정) ① ~ ② (생 략) 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	제19조(보정신청 통지 및 경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	○ 문장 정비(약칭 표현)
③ 답세의구자가 제28에 따다 세억모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부족세액에 대하여는 시행규		(학경 표면)
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 산한 <u>금액을</u>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		
④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족세액을 납부하지 <u>않는 경우 법 제41</u> 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.	④ <u>아니한 경우에는 해</u> 당 미납부세액에 대해 법 제4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	○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 반영  - 체납한 보정신청 세액(보정이자는 제외)을 대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
제31조(환급액) 계약내용 상이 <u>물품 등에</u>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 세 <u>등의 전액(해당 물품에 부과된 가산</u> 세, 가산금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한다.	제31조(환급액)	<ul> <li>지41/3 대 8으로 由무지근기근제 무되</li> <li>○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 반영</li> <li>○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15두52616 등)을 수용해 관련 조문 정비</li> </ul>
	로 하며, 그 물품의 일부만을 수출하거나	-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	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 에 해당하는 관세 및 내국세 등으로	되는 가산세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대상에 포함 아 수입물품 중 일부만을 수출한 경우 등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을 환급함을 명확히 표현
제35조(환급액) 수출을 갈음한 폐기물품에 대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관세 및 내국 세 등의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폐기에 따른 잔존물에 대하여는 그 폐기한 때의 해당 잔존물의 성질, 수량 및 가격에 따라부과될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	제35조(환급액)	<ul> <li>수입물품 중 일부만을 폐기한 경우에는</li> <li>그 일부에 해당하는 관세 등만을</li> <li>환급함을 명확히 표현</li> </ul>
제49조(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세 신청) ① 법 제38조의2제5항, 시행령 제32조의4제5항,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산세(보정이자)면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	제49조(가산세 감면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)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, 제42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보정이자 및 가산세감면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산세감면(보정이자 면제) 신청서에 따른다. 다	○ 「관세법」 제42조(가산세) 및 제42조의2 (가산세의 감면) 개정 사항 반영 - 이와 함께 일부 가산세 감면 사유에 대하여는 신청절차를 간소화* * '가산세 감면 신청서' 제출 대신 '수입・납세 신고 정정승인(신청)서'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는 방식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야 한다. <단서 신설>	만, 법 제4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6호	
	까지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는	
	경우에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	
	시」에 따른 수입·납세신고 정정승인(신	
	청)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여 세	
	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이하게 신	
	<u>청할 수 있다.</u>	
② 제1항에 따른 <u>가산세(보정이자) 면제</u>	② <u>가산세 감면(보정</u>	
<u>신청서를</u> 제출받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	이자 면제) 신청서를	
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		
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결과를		
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결		
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.		
제53조의2(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) ①	제53조의2(환특법 환급금의 제세 충당) ①	
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세관에 납부하		
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		
에는 환특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		
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		
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, 충당하고 남		
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.		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1. 체납된 관세등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 과 가산금,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2. 「관세법」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 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 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	1 - <u>가산세</u> 2. <u>다음 각 목의 금액</u>	○「관세법」 제41조(가산금) 삭제 및 제42조(가산세) 개정 사항 반영
<u>한여야 하는 금액</u> < <u>신 설&gt;</u> < <u>신 설&gt;</u> < <u>신 설&gt;</u> ② ~ ③ (생 략)	가. (현행 제2호와 같음)       나. 환특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  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      ② ~ ③ (현행과 같음)	○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제4항 개정 사항 반영
제55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0년 1월</u>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</u> <u>31일까지를</u>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55조(재검토기한) 	
<u>&lt;신 설&gt;</u>	부 칙 〈관세청고시 제2020-15호(2020. 5. 8.)〉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5월 8일부 터 시행한다.	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	제2조(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한 경과조치) 2	
	020년 1월 1일 이전에 법 제38조제1항에	
	따른 납세신고 한 분에 대한 가산금 및 가	
	산세에 대해서는 제10조제4항, 제11조제4	
	항, 제19조제4항 및 제53조의2제1항제1호	
	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	
	<u> 따른다.</u>	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변지 제1호서식) 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## ## ## ## ## ## ## ## ## ## ## ## ##	개정사유  ○ "가산금"등 불필요한 문구 정비
배합니다. 제출요구 부서: OO세판 OOO과 담당 과 장 : OOO (서명 또는 날인) 담 당 자 : OOO (서명 또는 날인) 연락처(전화) : 9999-999-9999 FAX : 999-999-9999 주 소 :	바랍니다. 제출요구 부서: OD세관 ODO과 음 당 과 장 : ODO (서명 또는 날인) 담 당 자 : ODO (서명 또는 날인) 연락처(전화) : 9999-999-9999 FAX : 999-999-9999 주 소 :	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(별지 제12호서식)	(별지 제12호서식)	
가산세(보정이자)면제 신청서         처리기간 20일           합	가산세 감면(보정이자 면제) 신청서       합성명     ②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       의 보고     ②사업자등록번호(또는 주민등록번호)       ②강호     ④전화번호       ②주소     ③신청공류     □ 보정이자 면제       □ 라네건적부실사 결정등지 지연(법 \$42의2①7호)     □ 강당한 사유(법 \$42의2①8호)     □ 기타(       ②수입신고번호     ※ 가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점 가능	O 법령 개정 사항등을 반영해 양식 변경
③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	③ 강면(면제) 받을 금백 # 수강선고별 구분  ① 정당한 사유 등 감 면(면제) 사유에 대 # 가재만이 부족한 경우 별형 가능 한 구체적 설명	
[관례법 시행명, 제32조4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(보정이자) 면제를 신청합니다.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        ○○ 세관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: 관계증명자료         ※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.       수수료         없 음	[편세법 사행령, 제39조제5항 및 제32조의4제7항에 따라 가산에 간면(보정이자 면제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- 구비서류: 입공자료 수수료 없 음	

